

은행은 채권양도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 담 보

채 권 양 도 계 약 서

-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뒀면 채권양도인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 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제1조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를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인감대조

채 권 자 겸

채 권 양 수 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인)

주 소

채 무 자

주 소 (인)

채 권 양 도 인

주 소 (인)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맺습니다.

제1조 채권의 양도

- ① 채권양도인(이하 “양도인”이라 합니다)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은행(이하 “채권자”라 합니다)에 대한 다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소유인 이 계약서 끝부분 “양도채권의 표시”란에 기재한 채권전액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은행 앞으로 그에 관한 채권증서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채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특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20	년	월	일자	약정서	
20	년	월	일자	약정서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은행(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거래,	거래

포괄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제외)
다.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 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라.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 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제2조 채권추심·변제충당
 채권자가 제1조에 의하여 양수한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3조 담보가치의 유지
 양도인은 공사의 부실·납품의 불합격등 양도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물론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제1조의 양도채권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곧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부족금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지시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상당액의 대신할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4조 특약사항

채권양도인 : (인)

※ 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성명 :	(인)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성명 :	(인)
상 담 자	직 위 :	성 명 :	(인)

양도채권의 표시

1. 원 인 계 약	년 월 일자	계약
2. 채 권 총 액	금	원
3. 지 급 기 일	년 월 일	
4. 채 무 자		
5. 특 기 사 항		

양도채권의 표시

1. 원 인 계 약	년 월 일자	계약
2. 채 권 총 액	금	원
3. 지 급 기 일	년 월 일	
4. 채 무 자		
5. 특 기 사 항		

양도채권의 표시

1. 원 인 계 약	년 월 일자	계약
2. 채 권 총 액	금	원
3. 지 급 기 일	년 월 일	
4. 채 무 자		
5. 특 기 사 항		

주의 : 특기사항란에는 지급조건과 원인계약이 납품계약일 때의 품명·수량·단가 등을 적습니다.

채권양도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채권양도란

-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채권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자기소유의 채권을 타인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빼앗기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 「특정채무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기·채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근담보」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세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책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근담보」

특정된 거래계약(예 :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채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한정 근담보」

특정한 종류의 거래(예:당좌대출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채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포괄 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여 그 책임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므로 포괄근담보를 선택할 경우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까지 서는 경우

-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을 별도로 서는 경우, 은행은 양도된 채권 외에 채권양도인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